

본인확인기관지정서

기 관 명 :

대 표 자 :

주 소 :

제 공 역 무 :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3과 같은
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